■ [별지 제51호서식의(가)] (규칙 제88조제1항 관련) <개정 2025. 12. 5.>

(투표참관인)·(사전투표참관인)신고서

1. 후보자성명(정당명):

2. 참관인 인적사항

투표소명	성명	생년 월일	성별	주소	전화 번호	직업	참관 일자	지정 순위	비고

(투표참관인)·(사전투표참관인)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- ○ ○ 당 인
- 대 표 자 ○ ○ ○ 인
- 후 보 자 ○ ○ ○ 인
- 선 거 사 무 장 ○ ○ ○ 인
- ○○선거연락소장 ○ ○ ○ 인

○○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
○○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: 1.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·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·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·리·반의 장이 투표참관인·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(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.

2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·미성년자·선거권이 없는 사람(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·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(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·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·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.

3. 투표참관인은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에, 사전투표참관인은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4. 사전투표참관인 신고 시 “참관일자”란에 참관인별로 참관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5. “지정순위”란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별로 참관인의 지정순위(1.2)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6. 교체신고 시에는 “비고”란에 이미 신고된 자 “○○○과 교체”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7. 법 제161조제4항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투표참관인·사전투표참관인 추첨에 참여할 1인을 투표참관인·사전투표참관인 중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는 “비고”란에 “추첨자”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(투표와 사전투표 모두 읍·면·동별 1인만 선정 가능).

[별지 제51호서식의(나)] <개정 2014.1.17>

(투표참관인)·(사전투표참관인)승낙서

1. 성　　명
2. 생년월일(성별)
3. 주　　소
4. 직　　업

위 본인은 (투표참관인)·(사전투표참관인)으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승낙인　　○　　○　　○　㊞

○○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
○○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　귀중

[별지 제51호서식의(다)] 삭제 <2007.11.22>